

p21

(3) 납부기한 연장의 기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 ②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해당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③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한 기간**

p38

(5) 수입신고한 물품의 연대납세의무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상기 (1), (2)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①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 ②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역신고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p57-58

✓ 핵심체크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잠정가격신고 대상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상기 ④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든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1.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1)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

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상기 1.(1)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상기 1.(2)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 (1)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① 구매자와 판매자 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 (2)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4)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상기 ⑤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4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시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 (2)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 (3)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3.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p74

#### (2)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상기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 **용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④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⑤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⑥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80

(2)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요건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하기 ~~(6)~~ (3)] 또는 제8항[하기 ~~(8)~~ (5)]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 ② 상기 ①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3) 동종·동류비율의 산출방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세관장은 **관세청장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과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p99

3) 과세자료의 제출기한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가산요소 비해당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핵심체크**

####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기한 연장 [시행령 제31조의5 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상기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 ③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④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⑤ 위 ①부터 ④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가산요소) 및 제2항(실제지급액 및 공제요소)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② 법 제31조(2평가방법)부터 제35조(6평가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4) 제1평가방법 배제 및 의견제시 기회제공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기한(6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p147

### 3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시행령 제62조]

#### (1) 철회 서류 제출

덤핑방지관세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개시 여부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p158

(5) 수락된 약속의 불이행시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부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기 ②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준용한다.

- 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② ① 외의 경우 : 잠정조치

p195

(5) 부과기간 및 결정기간

1)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수입수량제한 등" 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p219

✓ 핵심체크

관세법 시행령 별표2 : 간이세율 [시행령 제96조 관련 별표]

품 명	세 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라. 삭제 <2017. 3. 27.>	47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식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19  18  21
<del>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del>  <del>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del> <del>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del>	1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p230

√ 핵심체크

결정통지 기간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상기 1.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② 보정기간
- ③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 ④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 ⑤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 ⑥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 ⑦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p262

- ② 상기 ①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	100분의 20

p306

-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p309

- (3) 사후관리의 위탁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위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p339

✓ 핵심체크

기타 해제요청의 사유 [시행령 제141조의12 제1항]

상기 1. (3) ④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 ② 영 제141조의8 제141조의11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p340

(1)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p346

✓ 핵심체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시행령 제141조의4 제1항]

과세정보공유자(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①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 ②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 ③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p368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상기 (1)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핵심체크

재조사 재조사의 연기·중지·연장 등 [시행령 제151조의2]

상기 6. (5) 후단(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6항 및 제132조(이의신청)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제139조의2(관세 조사기간)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를 준용한다.

(6) 세부규정

상기 (1) ③ 후단 및 (5)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불복방법의 통지 [법 제129조]

(1) 후속 불복절차 통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정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① 이의신청인 경우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16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법 제120조]

(1) 「행정심판법」 적용배제

법 제19조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4)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상기 (2)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①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법 제128조 제5항 전단(재조사결정)(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 제2항(심사청구 결정기간)(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399

#### (4) 선(기)장의 경과보고 의무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425

## 5 물품의 반입·반출 [법 제157조]

#### (1) 반입·반출 신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송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세관공무원의 검사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송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p447

#### (3) 화물관리 비용 징수 및 요율 승인

지정장치의 **화물관리인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법 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472

(7) 관세의 징수

상기 (1)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지난** 경우 해당 공장 외 사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p493

**5**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법 제176조의3]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 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 ② 특허 갱신의 심사
- ③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편한 관한** 중요 사항

p591

- ㉠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 ㉢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 ㉣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 ㉤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p644

-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법 제27조(가격신고), 제38조(신고납부),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 사물품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③ 법 ~~제236조~~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④ 관세법에 따라 제출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⑤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⑥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 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p670

## 7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명의대여행위죄 등 [법 제275조의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p685

## 1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 제284조의2]

### (1) 심의사항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법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전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상기 ①에 따라 조사한 **사전 사건**의 고발·송치·통고처분(법 제311조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